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4985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15. 6. 26.

판결 선고 2015. 9. 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979,423원 및 그 중 238,461,101원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5. 1. 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4. 4. 14. 체결된 1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5. 2. 27.까지로, 보증원금은 264,000,000원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보증서 번호	신용보증일	보증기한	보증원금(원)	대출과목
D	2005. 3. 7.	당초 2006. 3. 6. 최종 2015. 2. 27.	당초 297,500,000 최종 264,000,000	중소기업자금대출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채채무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B(개명 전 이름: E)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범위

-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2) 피고 회사는 2014. 4. 14. 당좌부도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4. 30.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242,844,221원을 변제하였다.
- 3) 원고는 2014. 4. 30. 피고 회사로부터 4,383,120원을 회수하여 이를 대위변제금의 변제에 충당함에 따라, 대위변제금 잔액은 238,461,101원(= 242,844,221원 - 4,383,120원)이 남았다.
- 4) 그리고 충당된 위 회수금 4,383,120원에 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발생한 확정손해금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441원(원 미만 버림)이다.

대위변제일	회수일	회수금액	확정손해금계산내역	확정손해금
2014. 4. 30.	2014. 4. 30.	4,383,120원	4,383,120원 × 연 12% × 1일/365일	1,441원

- 5) 원고는 대위변제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등을 위하여 합계 2,516,881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B의 처분행위

- 1) 피고 B은 2014. 4.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F에게 1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다만,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6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같은 달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 F는 2014. 4. 14. 1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이하 '이 사건 입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B: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979,423원(= 대위변제금 잔액 238,461,101원 + 확정손해금 1,441원 + 권리 보전 비용 2,516,881) 및 그 중대위변제금 잔액 238,461,10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4.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인 2015. 1. 8.까지는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면서, F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중 1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피고 C에게 1억 4,000만 원을 증여하였는바,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증여한 금원이 피고 C의 일반 재산에 혼입되어 원상회복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으로서 피고 C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고 할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채권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또한 금융실명제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참조).

다. 판단

사해행위의 성립을 위한 다른 요건을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입금이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증여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F가 1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명목으로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금행위는 피고 B가 피고 C의 이 사건 계좌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 B가 위 1억 4,000만 원을 피고 C에게 종국적으로 증여할 의사로 이 사건 입금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계좌에서 2014. 3. 11. 피고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이, 같은 달 13. 피고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이, 같은 달 13. 피고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800만 원이 각각

송금되는 등, 피고 B은 늦어도 2014. 3. 11.경부터는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여 입·출금행위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계좌에서 2014. 4. 17. 1,500만 원이 인출되었고, H 명의 계좌로 660만원, I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J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이 각각 송금되었는데, 위와 같은 인출 및 송금행위는 모두 당시 피고 회사의 소재지 또는 피고 B의 거주지 부근인 농협은행 서울 강남구 K 지점(거래점 코드 L)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피고 B이 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피고 B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5,000만 원(다만, F가 승계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매도하되, F의 요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6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기로 하였다.

F와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6억 5,000만 원이 실제 지급된 것처럼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하여, F가 피고 B에게 6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4억 원을 다시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F는 2014. 4. 14.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입금을 하였고, 피고 B은 그 중 1억 원을 F의 지시에 따라 F의 사업 관계자인 M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반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입금행위로 인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지영난, 판사 김두희, 판사 정혜승